



환경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2. 28(화). 10:00	배포 일시	2023. 2. 28.(화) 08: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최한창 (044-201-6390)
		담당자	사무관 조준행 (044-201-6395)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도록 환경규제 혁신 속도 낸다

- 불필요한 환경 표지인증 폐지 등 5대 분야 21개 신규과제 추진 -

- ☐ 신기술 활용,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인증(그림자 규제) 개선
- ☐ 기후위기 대응,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환경규제 재정비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규제 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 환경부는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수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등

☐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운영되는 그림자 규제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 지난해 8월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에서 업계 개선요청

○ 또한,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검사항목을 축소*하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환경신기술 상용화를 촉진한다.

* 기술적 타당성, 저감능력,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등 3개 항목 중 일부 면제

□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재 활용을 확대하여 탄소를 감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 지역은 대형 건축물 소유주의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하여 가뭄지역 급수난 해소에 기여**한다.

*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청소 의무기한 만료 전 수질검사 기준을 충족하면 2개월 범위 내 유예

** 저수조 2,440개 1회 유예 시 약 10.2만톤의 물 절약 예상

○ 또한 폐유, 폐윤활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열적 처리를 통한 연료*, 합성수지제품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마련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분을 제거한 후 연료화

□ 각종 환경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재조정한다.

○ 하수 및 분뇨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되거나 건조되어 처리됨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준하여 규정된 성분 항목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을 국민 안전을 고려하여 현실과 부합토록 정비한다.

-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적정 하수처리가 어려워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행정처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업활동에 따르는 과도한 부담도 개선한다.
 -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일부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또한, 기존에 분석장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했던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외부 시험분석기관 의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장비 충족요건을 지정목적에 고려하여 현실화한다.
- 끝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초과 판단기준을 3시간 평균에서 24시간 평균으로 합리화하여 데이터 왜곡을 최소화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규제도 개선한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규제 혁신과제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 깨끗한 환경 등의 환경정책 목표는 굳건히 지켜나가되,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일선의 자율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환경 규제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주요 환경규제혁신 신규과제.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 1

주요 환경규제혁신 신규과제

①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수도꼭지 제품(EL. 221) 환경표지 인증기준 폐지	기존 현재 수도꼭지 제품(EL. 221)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KS인증 기준과 유사하나,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기업 부담 개선 수도꼭지 제품 환경표지 인증기준(EL. 221)을 폐지하여 기업 부담 경감	「환경표지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23.12월
2	신기술 인·검증 시설의 검사항목 축소	기존 환경신기술 인·검증 시설도 성능검사(3개 항목)를 실시 개선 환경신기술 인·검증 및 성능 확인을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성능검사 항목 축소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3.12월

② 기후위기 대응 강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자연재난(가뭄 등) 시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	기존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 의무 有 * 연면적 5천㎡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청사 등), 공연장, 대규모점포, 아파트 등 개선 가뭄으로 인해 제한급수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물 절약을 위해 저수조 청소 의무 유예 가능토록 제도개선 - 지자체의 장이 당초 의무기한 만료전 수질 검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를 실시하여 기준 충족 시 2개월 범위 내 유예 가능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2	폐기물 재활용 유형 확대	기존 폐유, 폐윤활유는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 부재 개선 폐윤활유 및 그 밖의 폐유를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및 기준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월
3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기존 음식물류폐기물의 에너지 회수 재활용은 혐기성소화·분해 등 생물학적 방식(R-9-4)만 허용 개선 음식물류폐기물의 유기성 물질은 열적 처리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재활용 유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4	폐의류의 재이용 활성화	기존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폐의류를 단순 선별 등을 통해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 유형(R-1-1) 및 재활용신고자 기준 부재 개선 폐의류(생활폐기물) 재활용 유형(R-1-1)을 추가하고,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선별·포장 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판매·수출하는 자를 추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월

③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규제 재정립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항목 개선	기존 찌꺼기 성분 검사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들로 규정 개선 실 처리상황에 맞게 검사항목 정비 ※ 찌꺼기의 50% 이상이 소각·건조 등으로 처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2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전문기관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기존 기술 진단 전문기관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개선 영업정지 시 주민 피해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23.6월
3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확대	기존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 열회수시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대기 환경기사 및 화공기사 등이 포함 개선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및 소각 열회수시설 자격기준에 시험과목이 유사한 에너지관리기사를 추가·확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월

④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행정처분 기준 개선	기존 위반행위자가 동일 위반행위로 타법상 제재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이중제재 개선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2	소음 검사기관 지정기준 완화	기존 (기술인력) 기술직 2명 이상, 기능직 2명 이상 (시설 및 장비) 다기능표준음발생기, 표준음 발생기, 마이크론 등 개선 (기술인력) 기술직 1명 이상, 기능직 1명 이상* (시설 및 장비) 표준음발생기**, 마이크론 등 * 타 법의 소음분야 기술인력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 ※ 타 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표준음발생기와 기능이 중복되고 고가장비인 '다기능표준음발생기'를 필수장비 목록에서 제외 ※ 표준음발생기로 충분히 소음도 검사 가능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	'23.8월
3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 지정기준 개선	기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 가능 * 특정기관과 유해특성(용출독성 제외) 시험분석 대행계약 체결 등 개선 폐기물 유해특성 항목(용출독성 제외)에 대하여 시험분석 가능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6월
4	소각열 회수율 감면기준 개선	기존 소각열 회수율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은 회수율 50% 이상부터 3단계로 감면하고 있으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는 사업장폐기물의 부담금 요율을 적용 개선 소각열 회수율 감면기준을 확대(30% 이상부터) 및 세분화(6단계)하고,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부담금 부과요율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적용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 시행령 개정	'23.12월
5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요건 개선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사업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1대 이상 구비 개선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 구비할 수 있도록 개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6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의 사무소 공유사용 허용	기존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활동을 위한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개선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의 사무실을 타 영업 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먹는물법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⑤ 기타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1	수질 TMS 초과 판단기준 합리화	기존 초과 판단기준은 3시간 평균치 연속 3회 이상 - 수질 악화 판단기준이 너무 짧아 사업장의 현실적 대응이 어렵고, 단발성 초과도 행정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회피를 위해 약품 과다 투입 등 사례 발생 개선 초과 판단기준을 24시간 이동 평균값 1회로 변경 - 일시적인 돌출농도에 의한 데이터 왜곡을 방지할 수 있으며, 측정값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준 합리화 - 아울러, 일일배출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 총량제'와 자료 연계 및 분석이 보다 용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3.6월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관련 사후신고 규정 마련	기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신고만 가능 - 시설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의 경우 행정절차 상 변경신고의 증빙자료가 뒤늦게 마련되어 불편 야기 개선 시설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는 변경 후 일정 기간 내에 사후 변경신고 허용 * 변경 후 2개월 이내 / ** 변경 후 30일 이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3.6월
3	액비 살포지 확보 관련 규제 합리화	기존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자가 생산한 액비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살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신이 확보한 살포지에 살포해야 함 개선 재활용신고자에게 액비를 위탁하여 살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 신고자에게 위탁한 다른 농가의 살포지에 살포를 허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3.12월
4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 수산물 확대	기존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 5㎡/일 이상)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분류 개선 조개류, 갑각류 등과 유사한 수산물 단순 가공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하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검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5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임시폐수배출시설 허용	기존 특대지역 내 도로·철도 건설을 위한 터널 공사에만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개선 특대지역 내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터널 공사 시에도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개정	'23.12월

연번	과제명	정비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6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기준 명확화	기존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부 기기를 폐수배출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 가동하여야 함 개선 최종방류구에 부착하여야 하는 기기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 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를 삭제하여 지원기준 명확화 및 현장 애로 해소	4대강 수계법 시행규칙 개정	'23.12월

☐ **국가표준(KS) 인증**

-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촉진하고 우수 공산품의 보급 확대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도

☐ **환경표지 인증**

- 같은 용도의 다른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을 인증하고 로고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환경성 개선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 **환경신기술 인·검증**

- 환경 신기술의 개발촉진과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 도입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분야 공법 기술로서 신규성 및 기술성능과 현장적용 우수성을 인·검증하는 제도

☐ **비점오염저감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 **토양오염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으로, 카드뮴, 구리, 비소 등 23개 물질 오염기준